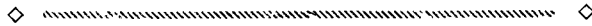




배 합 사 료 원 가 계 산

조 홍 래

<한국 사료 협회>



1. 국제적 사료수급 현황과 문제점

최근의 국제적인 사료가격 동태와 수급추세를 살펴보면 1972년도 상반기부터 단백질사료(어분의 수출국인 페루연안을 덮은 이상난류의 영향으로 어획량격감과 재고량 고갈로 페루의 어분 수출량이 60%나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단백질사료 부족의 여파는 미국의 대두박, 동식물성 단백질사료 가격을 자극하게 되었으며 소련의 해바라기, 인도의 낙화생의 작황마저 30%이상 감소되어 더욱 단백질 사료가격을 급등시켰을 뿐 아니라 73년에 들어와서는 품귀현상마저 야기되어 대두박과 어분은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물량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한 소련, 동구권, 인도, 파키스탄 및 중공 등지를 비롯한 세계적인 흉작은 72년도 하반기부터 곡물의 국제가격을 자극하여 10월 이후에는 날이 갈수록 예상을 초월하여 천정부지로 급등하여 곡물수입 가격은 증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50~70% 이상 양등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반구의 작황이나 곡물수출국가의 수출 여력으로 보아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수급사정을 잘 인식하여 당국에만 모든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양축방향과 사육규모를 조정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사료수급상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본다면 ①미국산 옥수수 72년도에도 풍작을 이루었으나 수확시기에 일기가 불순하여 수확에 지장을 주었다는 점. ② 곡물의 대수요 국가인 소련의 곡물수입이 급차에 한한 것이 아니라 계속 연간 2,000만톤 이상을 수입할 것이라는 점. ③ 중공의 수입 수요가 연간 1,000만톤선이 될 것이라는 점. ④ 소련과 동구권이 소맥과 사료곡물을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미국의 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⑤ 남반구의 곡물 수출국가(알제틴, 브라질, 호주, 남아연방)의 흉작으로 수출 여력이 감퇴하였다는 점. ⑥ 세계 어분의 주요 수출국인 페루와 칠레에 어획 전망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⑦ 단백질사료의 수급사정이 악화되어 미국산 대두박의 품귀현상으로 구매가 어려운 점. ⑧ 소련과 동구권의 사료곡물 다량 구매로 선입이 양등한 점. ⑨ 국내 공급절대량 부족 등 배합사료가격 양등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2. 배합사료 원가 계산

가. 원가산출 기준

1) 시기 : 8·3조치를 감안하여 옥수수 구매사정을 참고하여 3기로 구분하였음.

1972. 6—옥수수 수입가격 톤당 \$ 60선

1973. 1—옥수수 수입가격 톤당 \$ 70선

1973. 4—옥수수 수입가격 톤당 \$ 96선

<표 1.>

배합사료 원가 산출기준

항 목	시 기	원 가 산 출 기 준					
1. 배 합 율	각 시기 공통	농림부가 1972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배합사료 일제 검사시 전국 배합사료공장의 배합율 평균치를 적용.					
2. 원 료 비 가. 옥 수 수	1972. 6	\$ 60.85					
	1973. 1	\$ 70.04 (72. 12. 28~73. 2월 도착분 157,000%)					
	1973. 4	\$ 95.75(1973. 1. 19 낙찰가격 4월초 국내도착예정 120,000%)					
나. 어 분	1972. 6 1973. 1 1973. 4	도 입		국 산			
		톤당 C&F 가 격	사용율	국내가격	사용율		
		\$ 195	50%	60원/kg	50%		
		\$ 229	40%	88원/kg	60%		
		\$ 445	46%	100원/kg	54%		
		도 입		국 산			
	톤당 C&F 가 격	사용율	국내가격	사용율			
	\$ 129	50%	53원/kg	50%	73. 1. 19 대두박 10,000을 수입코자 일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풀기현상으로 없는 실정임.		
	\$ 139.65	26%	59원/kg	74%			
	\$ 200	26%	81원/kg	74%			
	1972. 6	시중 도매가격 기준(농림부 고시가격보다 저렴)					
	1973. 1	농림부 고시가격 적용					
1973. 4	현행 고시가격+원맥가격 상승율의 50%						
라. 소 맥 피	1972. 6	실구입가격 적용					
	1973. 1	실구입가격 적용					
	1973. 4	오파가격 적용					
마. 기타동물성	1972. 6	양등된 모든 원료가격 적용시에만 양등된 가격을 적용					
	1973. 1	1972. 6월 가격을 그대로 적용					
	1973. 4	1972. 6월 농림부 책정기준을 각 시기 공통적용(산란계 4,048원 육계용 4,171원)					
바. 국내원료 (기타 곡류, 박류)	각 시기 공통	국세청의 72년도 과세소득표준적용 5%(1972. 6 소득금액을 각시기공통 적용) 산란계 1,823원, 육계용 2,136원					
		영업세 5/1000를 각 시기 공통 적용					
		소득세는 이윤에서 각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조세공과금에서 제외하였음. (소득세는 이윤의 60.5% 해당액임)					
사. 무기물, 첨가제 기타	각 시기 공통	영업세 5/1000를 각 시기 공통 적용					
		소득세는 이윤에서 각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조세공과금에서 제외하였음. (소득세는 이윤의 60.5% 해당액임)					
		영업세 5/1000를 각 시기 공통 적용					
3. 제조 및 관리비	각 시기 공통	영업세 5/1000를 각 시기 공통 적용					
		소득세는 이윤에서 각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조세공과금에서 제외하였음. (소득세는 이윤의 60.5% 해당액임)					
		영업세 5/1000를 각 시기 공통 적용					
4. 이 율	각 시기 공통	영업세 5/1000를 각 시기 공통 적용					
		소득세는 이윤에서 각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조세공과금에서 제외하였음. (소득세는 이윤의 60.5% 해당액임)					
		영업세 5/1000를 각 시기 공통 적용					
5. 조 세 공 과	각 시기 공통	영업세 5/1000를 각 시기 공통 적용					
		소득세는 이윤에서 각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조세공과금에서 제외하였음. (소득세는 이윤의 60.5% 해당액임)					
		영업세 5/1000를 각 시기 공통 적용					
6. 사 료 성 분	각 시기 공통	영업세 5/1000를 각 시기 공통 적용					
		소득세는 이윤에서 각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조세공과금에서 제외하였음. (소득세는 이윤의 60.5% 해당액임)					
		영업세 5/1000를 각 시기 공통 적용					

2) 원가계산의 구별
 각 시기별로 수입사료가격 양등요인만 고려시와 모든 양등된 원료 적용시로 구분하여 수입되는 원료가격의 변동이 배합사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였음.

3) 대상사료
 성계용 배합사료와 육계용 배합사료의 2종을 대상으로 하였음.

④ 배합사료의 원료가격 이외의 모든 원가구성요인은 편의상 1972. 6월과 동일가격을 적용

하여 원료가격 이외의 양등요인을 배제하였음.

5) 배합비율, 제조 및 관리비, 이윤(과세 소득표준)과 조세공과금등은 행정당국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과 근거에 의하여었음.

6) 각 항목 별 원가산출기준은 <표 1>에 상세히 분류 소개하였음.

나. 배합사료 원가계산

<표 1>에 제시한 원가산출기준에 따라 성계용 배합사료와 육계용 배합사료가격을 <표 2> <표 3>과 같이 계산하여 소개하였으니 양측가 여러분은 자기가 희망하는 배합비율에 맞추어

원가계산을 하여 보면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표 2> 성계용 배합사료 원가계산

<표 3> 육계용 배합사료 원가계산

<표 2>와 <표 3>의 원가계산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73년 1월 현재 성계용 배합사료는 수입가격 고려시 10.5%, 모든 양등된 원료가격 적용시 13.2%, 육계용 배합사료는 각기 11.6%, 12.8%, 원가 상승 요인이 나타났으며 1973년 4월에는 성계용 배합사료는 44.0%, 46.9%, 육계용 배합사료는 47.3%, 48.8%의 원가 상승요인이 있으며 원료이외의 원가구성요인을 감안할 경우 더욱 그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표 2.>

성계용 배합사료 원가계산

단위 : 톤당 가격(원)

항 목	배합율 (%)	72.6.30 기준		73. 1 현재				73. 4				
		단가	금액	수입가격 양등요인만 고려시		양등된 모든 원료 적용시		수입가격 양등요인만 고려시		양등된 모든 원료 적용시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원 료 비												
옥 수 수	61.3	28,696	17,591	32,113	19,685	32,113	19,685	43,641	26,752	43,631		
기 타 곡 류	2.4	27,050	649	27,050	649	30,280	727	30,280	727	39,100	938	
대 두 박	7.3	55,288	4,036	59,835	4,368	59,835	4,368	81,381	5,941	81,381	5,941	
기 타 박 류	3.6	36,210	1,304	36,210	1,304	56,610	2,038	56,610	2,038	59,230	2,132	
강 료 류	11.9	12,710	1,512	15,370	1,829	15,370	1,829	15,370	1,829	20,305	2,416	
어 분	6.4	72,687	4,652	92,761	5,937	92,761	5,937	142,180	9,100	142,180	9,100	
기 타 동 물 성	1.1	48,145	530	48,145	530	67,790	746	67,790	746	84,840	933	
무 기 물	5.08	4,500	229	4,500	229	4,500	229	4,500	229	4,500	229	
철 가 제	0.9	—	1,858	—	1,858	—	1,858	—	1,858	—	1,858	
기 타	0.02	26,250	5	26,250	5	26,250	5	26,250	5	26,250	5	
계	100		32,366		36,394		37,422		49,225		50,304	
2. 제조 및 관리비			4,047		4,047		4,047		4,047		4,047	
감 량 (2%)			647		647		647		647		647	
가 공 비			850		850		850		850		850	
관 리 비			1,450		1,450		1,450		1,450		1,450	
포 장 비			1,100		1,100		1,100		1,100		1,100	
3. 원 가(1+2)			36,413		40,441		41,469		53,272		54,351	
4. 이 윤 (5%)			1,821		1,821		1,821		1,821		1,821	
5. 원가(이윤포함)			38,234		42,262		43,290		55,093		56,172	
6. 조세공과(5/1,000) (영업세)			191		211		216		275		281	
7. 판 매 가 격			38,425		42,473		43,506		55,368		56,408	
※72. 6. 기준대비			100		110.5		113.2		144.0		146.9	

<표 3.>

육계용 배합사료 원가계산

단위 : 톤당 가격(원)

항 목	배합율 (%)	72. 6. 30 기준		73. 1 현재				73. 4			
		단가	금액	수입가격 압등요 인단 고려시		압등된 모든 원 료 적용시		수입가격 압등요 인단 고려시		압등된 모든 원 료 적용시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원 료 비											
옥 수 수	62.3	28,696	17,778	32,113	20,006			32,641	27,188	43,641	27,188
기 타 곡 류	1.0	27,050	271	27,050	271	30,280	303	30,280	303	39,100	391
대 두 박	12.7	55,288	7,022	59,835	7,599	59,835	7,599	81,381	10,335	81,381	10,335
기 타 박 류	2.8	36,210	1,388	36,210	1,388	56,610	1,585	56,610	1,585	59,630	1,658
강 류	5.7	12,710	724	15,370	876	15,370	876	15,370	876	20,305	1,157
어 분	11.0	72,687	7,996	92,761	10,204	92,761	10,204	142,180	15,640	142,180	15,640
기 타 동 물 성	1.5	48,145	722	48,145	722	67,790	1,017	67,790	1,067	84,840	1,273
무 기 물	1.5	4,500	68	4,500	68	4,500	68	4,500	68	4,500	68
첨 가 제	1.4	—	2,308	—	2,308	—	2,308	—	2,308	—	2,308
기 타	0.1	26,250	26	26,250	26	26,250	26	26,250	26	26,250	26
계	100	—	38,304	—	43,468	—	43,992	—	59,396	—	60,044
2. 제조 및 관리비			4,166	—	4,166	—	4,166	—	4,166	—	4,166
감 량 (2%)			766	—	766	—	766	—	766	—	766
가 공 비			850	—	850	—	850	—	850	—	850
관 리 비			1,450	—	1,450	—	1,450	—	1,450	—	1,450
포 장 비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3. 원 가(1+2)			42,470	—	47,634	—	48,158	—	63,562	—	64,210
4. 이 율 (5%)			2,124	—	2,124	—	2,124	—	2,124	—	2,124
5. 원가(이율포함)			44,594	—	49,758	—	50,282	—	65,686	—	66,334
6. 조세공과(5/1,000) (영업세)			223	—	249	—	251	—	328	—	332
7. 판 매 가 격			44,817	—	50,007	—	50,533	—	66,014	—	66,666
※ 72. 6 기준대비			100	—	111.6	—	112.8	—	147.3	—	148.8

3. 배합사료 가격전망

이상과 같은 배합사료의 원가상승 요인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3조처로 배합사료 가격을 개속 동결하고 있어 배합사료 가격이 연간 물가상승을 3%선 억제 때문에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합사료공장은 현재의 국제적 원료가격의 폭등사태가 자체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중대문제로 단정하고 업계의 협조와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긴박한 사태를 수습할수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

이 업자 일동이 연서하여 배합사료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생산비를 보장하여 줄 것을 관계요원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고차원에서의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겠으나 연관업계의 상호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사료가공업자 일동이 연서한 건의서의 전모를 소개하고자 한다.

— 건 의 서 —

○○○○○귀하

우리 사료업계 일동은 조국근대화 작업 촉진을 위한 대통령각하의 8·3 긴급재정명령에 적극 호응하여 축

산진흥시책의 기반이 되는 사료의 수급원활과 가격안정 및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업체의 현 실정을 들여다 보면 배합사료 원료의 국제시세가 천정부지로 급등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의 품질등 예기치 않은 사태 발생으로 미약한 업체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배합사료 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실정을 냉철히 판단하셔서 배합사료 가격의 현실적인 조정을 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와 우리의 안타까운 실정을 호소하오니 당국의 적극적인 시책으로 이제 겨우 발전단계에 들어선 축산업이 위축되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신 배려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합사료 판매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사유
(1972년 6월 대비)

첫째,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곡물이 감소되어 대다수 국가가 미국 일변도로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곡물의 국제시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 : 옥수수 수입가격 톤당 \$ 60 → \$ 97(62%)
대 두 수입가격 톤당 \$ 140 → \$ 200(43%)

둘째, 세계 어분 수출량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페루의 어획량 격감과 재고량 고갈은 국제적인 단백질사료 가격을 자극하여 미국의 대두박, 캐나다의 채종박등 각종 부원료가격이 앙등되고 있습니다.

어 분 수입가격 톤당 \$ 210 → \$ 445(139%)
대두박 수입가격 톤당 \$ 135 → \$ 188 (55%)
채종박 수입가격 톤당 \$ 80 → \$ 130 (63%)

셋째, 가축수의 증가에 비하여 사료공급부족으로 국내산 부원료의 품질과 가격앙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채종박 가격 톤당 38,000원 → 56,000원(47%)
입 박 가격 톤당 47,000원 → 59,000원(26%)
호마박 가격 톤당 44,000원 → 58,000원(32%)
어 분 가격 톤당 70,000원 → 88,000원(26%)

넷째, 이밖에 간접수입으로 생산되는 소맥피나 대두박 가격이 국제적인 원소맥과 대두 가격 폭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배합사료의 판매가격을 계속 동결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지 않을 경우

첫째, 중소기업인 대부분의 사료업체는 계속되는 출혈생산으로 불원 불실기업으로 전락되어 도산될 것입니다.

둘째, 배합사료 원료의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지기 때문에 배합사료의 부족현상이 유발될 것입니다.

셋째, 축산업의 안정된 발전이 보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축산이 먼저 위축될 것입니다.

넷째, 축산업의 위축은 축산물 생산을 감소시켜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체위향상을 억제하게 됨으로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일단 위축된 축산업의 재건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다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요인을 분석하여 볼 때 우리 사료업체의 재정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생산원가가 조정되지 않는 현실정하에서 도산을 무릅쓰고 출혈생산을 지속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뿐 아니라 사료가공업계의 출혈 생산과 도산으로 축산업의 안정된 발전이나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 지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한 연관 축산업계가 연쇄반응을 일으켜 경영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근대화가 촉진되고 축산업이 발전하려면 연관산업의 균형된 발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료업자 일동은 현명하신 배려로 앞으로 꾸준히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사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바라 업자일동 연서 건의하오니 각별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3년 1월 12일

이상과 같은 사료업자 일동의 건의내용을 보거나 국제적 사료수급 사정을 살펴 볼 때 이와 같은 긴박한 사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전망이 희박하다는 것을 참작하여 양측가는 적정규모의 가축사육과 기획생산 및 관리기술 개선으로 경영 합리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배합사료공장은 종래와 같은 고수준사료의 생산에서 오는 사료자원의 낭비와 과당경쟁에서 오는 외상거래 및 투매행위 등 전근대적인 기업풍토를 쇠퇴하며 현금기제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아울러 우리 여건에 맞는 일정수준의 품질이 보장된 배합사료를 국제적 수급사정에 구애됨이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배합실계를 하여야 할 것이고 양측가로 하여금 경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아프터 서비스를 성실히 하여 주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오늘날 국제적 수급사정과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으로 빚어지고 있는 축산업계 상호간의 불신풍조가 더 이상 조성되지 않도록 당국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사태수급과 적정수준의 배합사료판매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